

# Korean Tax Update

April 2018, Issue 46

## [조세뉴스]

### 국세청,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 명 세무조사 착수[보도자료]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국세청,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보도자료]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8년 4월 3일과 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 1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와 제 16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함.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승희 청장은 캄보디아 청장과 양국 최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 및 발전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함.

베트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18.7. 시범실시)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전하면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하였고,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전문보기]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인상함.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금액을 개인은 거주자별 300만원에서 건별 300만원으로, 법인은 법인별 5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개정함.

이 훈령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함. 다만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 종전의 규정(2015.6.1. 개정 국세청 훈령 제 2098호)에 따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전문보기]**

**(1)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신설된 법령 조문에 맞게 부분조사 정의 및 실시사유 등을 규정하고 사전통지 기한을 10 일에서 15 일로 확대하는 한편,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세무조사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의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기한과 조사결과 통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중지기간 중 질문·조사하는 것을 금지함.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20 일 또는 40 일)을 명문화하고 결과통지 내용(수정신고 가능한 사실 등 안내)을 구체화함.

**(2) 범칙조사 관련 절차 개선**

- 범칙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척·회피 규정 위반 시 해촉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범칙처분 결정 심의 시 처분대상자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함.

**[예규·판례]**

**[판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 두 46935 판결

-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판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 두 27787 판결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 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 두 10232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판례 3]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등의 부담금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 두 35844 판결

- 이 사건 부담금은 부지의 지목변경 내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을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나머지 항목(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함.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써 주된 용도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 원인이 발생한 이 사건 조경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판례 4]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두 65524 판결

- 2009.9.21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9-327 호로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이 사건 기준)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인증받아 판매한 감축실적은 사업자, 거래중개 전문기관 등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정부에 판매될 수 있었고,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가액으로 감축실적을 구매하였다면 적어도 정부가 구매한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감축실적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판례 5]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 두 303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누 61302,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4294)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

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는 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 [심판례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 10% 적용 여부

조심 2018 서 0716, 2018. 3. 29.

- 청구법인은 양도한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 104 조 제 1 항 제 11 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 조 제 4 항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주 1 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2% 이상 소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주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심판례 2]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 중 3223, 2018. 4. 11.

-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3 제 1 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 9 조 및 제 13 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은 자본시장법상 제정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거래소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설립된 코넥스시장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3 상 '증권시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례 3]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홍보비용 및 자금관리위탁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지 1082, 2018. 3. 29.

- 조합원의 모집은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 중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건본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분양촉진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4]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 제 6 조 제 8 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 지 0194, 2018. 4. 9.

-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크레인이 설치된 건물 내에는 화물하역 외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 3 조 [별표 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 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 6 조 제 8 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1]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법인이 대중제로 등록된 토지를 회원제 코스와 결합하여 운영하면서 요금혜택을 받고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대중제로 등록된 토지(쟁점토지)에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684, 2018. 3. 28.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 12 조에서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 7 조는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을 회원 모집여부로 구분하고 있어, 회원모집 절차 없이 단순히 회원에게 요금혜택을 부여하거나, 우선이용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시정명령 대상일 뿐이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인의 쟁점토지를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예규 2] 2017 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17.12.31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일몰 종료된 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2018. 3. 28.

- 2017 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 제 56 조제 3 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세법 규정은 2017 년 12 월 31 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적용되며,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에 따른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 따라서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 1 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예규 3]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4489, 2018. 4. 4.

- 최소납부세제의 입법 취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77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한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 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 13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에 대하여 ( )안의 내용은 취득세가 중과세되어 면제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최소납부세액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